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6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 안규백·조 국·윤준병

장종태 • 허성무 • 정성호

부승찬 • 안태준 • 문진석

임종득 · 김영환 · 박선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

법률 제 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일반재산을"로,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을 "공급하려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 0조제4항"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 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 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 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하려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 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 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우<u>선하여 공급</u>-----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 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 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 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 (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 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 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 설>

다.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같은 법 제57조제6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의 "시장· 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